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99. 11. 22

다. 상 정 일 자 : '99. 11. 22(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김 종 철

나. 개정사유

o 장학생 자격기준이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은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이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로 되어 있어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교간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함으로서 서로의 평등한 자격을 유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o "단, 실업계 고등학생 학생은 100분의 5이내"를 삭제(안 제12조 1항)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양 정 열)

o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내고장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자격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o 인문계 고등학생과 동일하게 실업계 고등학생도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로 완화(종전은 100분의 5)조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개정작업이라 평가됨.

o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개정 절차상이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1999.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장학생 자격 기준이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은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이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로 되어 있어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교간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함으로서 서로의 평등한 자격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를 삭제(안 제12조 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1항중 "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생략)	제12조(장학생의 자격)①(현행과 같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한 자	---------- 삭 제
2~3(생략)	삭 제
②~③(생략)	2~3(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